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 10.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장 이문희】

가.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 세부지표 중 미정비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부합동평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받은 어려운 한자어 순화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6조제6호 중 “양양 밋”을 “계승발전 밋”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정된 각각의 조례 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상황에도 맞아야 하나, 우리나라 법령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6조제6호 중 “양양 밧”을 “계승발전 밧”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각각 개정하고자 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동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목적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